

연구생제도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본원 소속 전문기사의 양성을 위한 연구생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제반 사항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원 소속 연구생 및 연구생 지도사범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시 행

제 1 절 연구생의 자격 및 가입

제 3 조 (연구생 가입 절차 및 제한)

- ① 본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기력이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자는 본원 연구생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연구생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본원이 정한 양식의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본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연구생은 가입서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본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아마추어 대회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연구생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 4 조 (연구생의 의무)

1. 연구생은 본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생시합과 바둑·소양수업 등 본원이 규정한 교육과정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생은 연구생 시합(리그)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서 조언 및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연구생은 모든 대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을 엄금한다. 다만 주최·주관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연구생은 본원 소속 연구생으로서의 품위와 본원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본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연구생은 본원의 제반규정 및 연구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칙·규범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금지 등)

- ① 연구생은 온라인 대국에서 제4조제3호 위반 방지와 위반 의혹 발생 시 한국기원 또는 주최·주관사의 조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연구생은 본인의 온라인 대국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단, 친선대국, 본상이 없는 대국, 랭킹포인트 획득을 위한 대국은 제외할 수 있다.
 2. 제4조제3호 위반 의혹에 대해 한국기원 또는 주최·주관사의 요청이 있을 시 대국에 사용된 컴퓨터 및 부정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기기 일체를 즉시 제출한다.
 3. 제4조제3호 위반 방지 및 위반 의혹 조사에 필요한 기타 조치
- ② 연구생이 전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은 제4조제3호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한다.
 1. 상금, 대국료, 초청료, 랭킹포인트 등 보상이 발생하는 대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제적의 징계를 처분한다.
 2. 친선대국, 보상이 발생하지 않는 대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정학의** 징계를 처분한다. <2025.07.29. 개정>
 3. 동조 제1호, 제2호의 징계 처분은 제7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5 조 (연구생의 연령제한)

연구생의 자격은 만 19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생의 교육

제 6 조 (연구생의 소집)

본원과 연구생 지도사범이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

사범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생의 교육)

- ① 연구생은 본원과 연구생 지도사범의 지시를 받아 바둑수업 및 예비 전문기사로서의 소양수업, 연구생시합(리그)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연구생 지도사범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업 및 시합을 가질 수 없을 경우에 연간 연구생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은 학교시험·검정고시·수학여행 등 학생 신분 또는 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국가 등에 의한 공식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일 7일 전에 연구생 지도사범에게 연구생시합의 대국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전항 이외의 이유로 인한 연구생시합 대국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원과 연구생 지도사범의 협의·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

제 8 조 (연구생시합 방식)

- ① 연구생시합은 풀리그와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② 연구생시합의 세부방식은 본원과 연구생 지도사범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연구생시합의 대국 수칙)

- ① 연구생시합의 대국은 본원 '바둑규칙'과 '바둑 경기 규정', '소속기사 대국 내규'를 준용한다.
- ② 1일 2대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치수는 총 호선으로 하고 ~~혹은 6집반의 덤을 낸다.~~ 덤은 본원 경기규정에 따른다. <2025.07.29. 개정>
- ④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40초 3회를~~ 입단대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07.29. 개정>
- ⑤ 대국시작 시간보다 15분 초과하여 지각한 경우에는 시간패로 처리하며, 15분 이내로 지각한 경우에는 늦은 시간 만큼 공제한다. 단 본원 경기규정 개정 시 그에 따른다. <2025.07.29. 개정>
- ⑥ 대국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연구생 지도사범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연구생 지도사범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⑦ 연구생은 대국 종료 후 결과를 기록지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단, 빅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대국을 실시한다.

- ⑧ 연구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국에 기권할 수 없다.
- ⑨ 연구생은 다른 연구생의 대국에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대국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⑩ 연구생의 교육을 위한 각종 수업의 시작 시간은 대국시작 시간으로 간주한다.
- ⑪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방침 및 연구생 지도사범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절 연구생의 대회 참가

제 10 조 (연구생의 대회 참가 및 제한)

- ① 입단대회의 출전 자격은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 ② 동호인 교류전, 기타 상금(현금)이 주어지는 비공식 대회를 포함한 각종 아마추어 대회의 참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회의 특성상 연구생의 참가가 필요한 경우는 본원의 허락 하에 출전할 수 있다.

제 11 조 (입단대회 본선 시드 배정)

‘입단대회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연구생시합 성적을 합산하여 연구생 약간 명에게 입단대회 본선 시드를 부여한다.

제 4 절 연구생의 회비

제 12 조 (연구생의 회비)

- ① 연구생은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생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② 연구생 회비를 2회 이상 연체한 자는 연구생시합에서 제외되며, 연체액을 완납하면 연구생시합에 참가할 수 있다. 연체된 회비를 완납하여 연구생시합에 재참가할 경우에는 참가가 제외되었던 연구생시합의 해당 조 마지막 순번으로 배정한다.
- ③ 연구생 회비를 연체한 자가 입단하는 경우에는 입단 후 본원이 수령하는 대국료에서 연구생회비 연체금을 우선 공제한다.

- ④ 연구생 회비를 연체한 자가 연구생 자격을 상실한 후 본원 본원으로 각종 제증명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본원은 체납된 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 5 절 연구생의 휴학 및 복학

제 13 조 (연구생의 휴학)

- ① 연구생은 건강, 진학 등의 이유로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 시 보호자의 동의서(휴학원)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고, 희망하는 휴학기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 ① 휴학 기간은 휴학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연구생 시합 1~3회차 이내로 한다.** <2025.12.18.개정>
- ③ 휴학기간 중에는 일체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제적된다.

제 14 조 (연구생의 복학)

- ① 복학을 원하는 연구생은 휴학기간 종료 익일까지 본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휴학 종료일에 자퇴한 것으로 본다.
- ② 휴학 종료 후 복학 시에는 ~~기존 연구생시합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생선발 전에 참가하여야 한다.~~ **휴학 전 참가하였던 연구생시합 해당 조의 차하위 조의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한다.** <2025.12.18.개정>
- ③ 정학 종료 후 복학 시에는 정학 전 참가하였던 연구생시합 해당 조의 차하위조의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한다.

제 6 절 연구생의 제적 및 자퇴

제 15 조 (연구생의 제적 및 자퇴)

- ① 연구생이 자퇴를 신청할 경우 보호자 또는 지도사범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① 제적된 경우는 연구생으로 재가입 될 수 없으며, 자퇴한 경우는 연구생 선발대회를 통해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적 또는 자퇴한 자라 하더라도 본원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 7절 연구생의 징계 및 소명절차

제 16 조 (연구생의 징계)

① 본원은 연구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본원에서 1차 심사 후에 징계심의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② 연구생 지도사범은 연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연구생의 징계안을 '연구생 징계위원회'에 서면 청구하여야 한다. 징계안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 제소 사유, 징계 방안 등을 명시한다.

1. 본 규정 제4조 각 호를 위반한 경우
2. 본 규정 제4조의1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본 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본 규정 제9조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5. 본 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연구생이 본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응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연구생으로서의 품위를 해하여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② 연구생 지도사범은 연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해당 연구생의 징계안을 본원에 서면 청구하여야 한다. 징계안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 제소 사유, 징계 방안 등을 명시한다. <2025.07.29. 개정>

1. 본 규정 제4조 각 호를 위반한 경우
2. 본 규정 제4조의1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본 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본 규정 제9조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5. 본 규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연구생이 본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응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연구생으로서의 품위를 해하여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본원은 연구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본원에서 1차 심사 후에 징계심의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단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1차 심사로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2025.07.29. 개정>

④ 운영위원회는 징계안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본 규정 제4조제3호 위반에 대해서는 제4조의1 제3항을 우선 적용한다.

1.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2. 견책 : 징계대상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청한다.
3. 정학 : ~~징계대상자의 정학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정학 기간에는 본원이 시행하는 연구생시합과 비독수업에 참가할 수 없다. 정학 종료 시점에 연구생시합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생시합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차기 연구생시합의 차하위조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한다. 징계대상자는 3회차 이하의 연구생시합과 정학 기간 동안 본원이 운영하는 연구생 관련 행사와 수업 등에 참가할 수 없다.~~
~~<2025.07.29. 개정>~~
4. 제적 : 징계대상자의 연구생 등록을 말소한다. 제적된 자는 연구생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제16조의1 (임시조치) <2025.07.29. 신설>

- ① 운영위원회 징계 결정 전이라도 명백한 징계 사유가 밝혀지거나, 해당 연구생의 연구생 대회 출전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원은 논의 후 연구생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② 본원은 대회 진행 중에 임시조치 결정할 경우 잔여대국 몰수패 또는 해당대회 전체 몰수패 적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임시조치 후 징계 결정이 없거나 경고, 견책의 징계인 경우는 임시조치 당시 소속 조의 해당순번으로 참가하고 정학 후 복귀할 경우는 차기 연구생시합의 차하위조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한다.

제 17 조 (징계에 대한 소명)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명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는 접수된 징계안을 첨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징계 심의, 의결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진술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자체 판단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증

인 또는 해당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징계심의대상자가 운영위원회에 진술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용 가능한 증거 자료를 참고하여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징계대상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는 위 통지서의 수령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8 조 (내신 입단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생 내신 입단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입단제도 규정」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조항에 따른다.

제 8 절 지역연구생의 설치

제 19 조 (지역연구생의 설치)

- ① 본원의 필요에 따라 각 광역시·도 협회에 지역연구생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연구생의 설립 및 시행 등은 본원 「지역연구생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연구생 지도사범

제 1 절 지도사범의 선임 및 임기

제 20 조 (지도사범의 선임)

연구생 지도사범은 본원이 연구생 지도사범을 지내지 않은 본원 소속 전문기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21 조 (지도사범의 임기)

연구생 지도사범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격사유가 없을 시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최대 3년까지로 한다. <2025.12.18.개정>

제 2 절 지도사범의 역할 및 활동제한

제 22 조 (지도사범의 역할)

연구생 지도사범은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연구생 대상 교육과 시합에서의 지도 및 감독
2. 연구생 시합 및 기타 연구생 관련 대회에서의 심판 활동
3. 기타 연구생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주도적 결정

제 23 조 (지도사범의 활동제한)

연구생 지도사범은 임기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금지한다.

1. 모든 프로기전의 심판활동
2. 사설 바둑도장을 위한 홍보활동

제 3 절 지도사범의 사범료

제 24 조 (지도사범의 사범료)

본원은 연구생 지도사범에게 매월 별도로 정한 사범료를 지정일에 지급한다

제 4 절 지도사범의 징계

제 25 조 (지도사범의 징계)

① 연구생 지도사범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연구생 지도사범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할 경우(연구생시합 당 2회 이상)
4.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또는 조퇴할 경우(연구생시합 당 3회 이상)
5. 제22조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감봉 : 1개월 감액은 월 지급액의 반액으로 하고, 감봉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2. 직위해제 : 확정된 즉시 직위해제 된다. 단, 당월 통상 사범료는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연구생제도 시행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본 규정은 199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나.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다. 본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라. 본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마. 본 규정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바. 본 규정은 제14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생 시행 규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본 규칙은 199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나. 본 규칙은 연구생 시행규정의 개폐에 따라 변경된다.
 - 다. 본 규칙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라. 본 규칙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마. 본 규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바. 본 규칙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사. 본 규칙은 제14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생 대국 기본 수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본 수칙은 200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나. 본 수칙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다. 본 수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라. 본 수칙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마. 본 수칙은 201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바. 본 규칙은 제14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연구생 사범에 관한 내규'의 시행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본 내규는 197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나. 본 내규는 198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다. 본 내규는 199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라. 본 내규는 2004년 01일 01일부터 시행한다.
 - 마. 본 내규는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바. 본 내규는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사. 본 내규는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아. 본 내규는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자. 본 내규는 201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차. 본 내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카. 본 내규는 제14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6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제29차 운영위원회가 ‘연구생 시행 규칙’과 ‘연구생 대국 기본 수칙’을 ‘연구생 시행 규정’에 통합 개정하여 2020년 04월 24일부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의 「입단제도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25년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25년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